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 게시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입소정원은 136명으로 한다.

2) 모집방법

- ① 방문, 전화 문의 : 입소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문의를 받으면 입소 희망자 명단에 기록하고 질문에 안내한다.
- ② 입소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경우,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시를 통해 입소의뢰공문이 발송되도록 한다.
 2. 시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한 10일 이내에 입소여부가 결정된 대상 어르신을 통보 받으면 지역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보호자가 어르신을 모셔와 입소시킨다.
 3. 그 외 일반인인 경우, 안내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에 직접 신청한다.
 4. 입소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입소시간은 보호자와의 상담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에 입소하기로 한다.
 - 나. 입소 전 직원회의를 통해 입소 예정자에 대한 숙소를 미리 정한다.
 - 다. 입소 시 입소 면접은 입소 면접원 (입소면접원이라 함은 시설의 장, 부원장, 사무국장, 과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을 이른다)들이 실시한다.
 - 라. 기초 서류와 어르신에 대한 질문과 동행한 가족들을 통하여 거주 예정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 마. 입소 시 금품, 물품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바. 참석한 보호자 연서로 계약서 및 동의서 등을 받도록 한다.
 - 사. 보호자들에게 각종 안내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5.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 가. 입소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나.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라.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 마.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 바.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이하“갑”이라 칭함)의 의무
 -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마.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다.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 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② 본 시설의 급여 및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식사재료비 1식 4,000원(조 · 중 · 석식, 1일 3식 기준),
 간식비 1일 2,000원 산정(1일 x 2회 x 1,000원)
 상급침실 사용료:(본관 1인실) 1일 7,000원, (신관 2인실) 1일 10,000원,
 (신관 1인실): 1일 20,000원
 시설(입소)급여는 개인부담율 20%,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2%, 8%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0%이다.
- ③ 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비급여 (시설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등급	일일 급여	공단지원 보험료(80%)	입소자 부담금 (단위 : 원)				
			본인부담금 (20%)	본인부담금(12%/8%)	식대	간식비	합계
1등급	93,070	2,233,680	558,420	335,052/223,368	360,000	60,000	978,420
2등급	86,340	2,072,160	518,040	310,824/207,216	360,000	60,000	755,052
3,4,5 등급	81,540	1,956,960	489,240	293,544/195,696	360,000	60,000	643,368

■ 계약의 해제

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이 종료된다.

1. 입소 어르신이 사망하였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에 의거 재 등급 판정으로 등급 외 대상자
3. 장기요양 유효기간 만료 및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4. 장기요양제도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계약 종료
5.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6. "갑" 또는 "을" 어느 한쪽이 이 계약을 해제 하였을 경우

본 시설에 입소한 모든 어르신은 퇴소 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퇴소할 수 있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적절한 퇴소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본인이 퇴소를 원할 경우 친절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별 진료일지 및 업무일지에 그 사항을 기록한다.
 -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 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축탁의)의 진료에 관한 사항
 - 가. 협약 의료기관(축탁의)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다. 협약의료기관(축탁의)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라. 협약의료기관(축탁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가. 입소인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 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본 시설에서는 주 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과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a. 병원진료 수일 전에 주 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
 - b. 병원진료를 위한 주 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c.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주 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a. 응급상황 발생 시 주 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b.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주 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a. 가벼운 질병 등(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 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주 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부담한다.
 - b. 입소인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주 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함께 동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c.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주 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1. 시설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③ 채무의 이행
 - 1.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의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 원상회복 비용 또는 기타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별도 부담한다.

■장기요양기관 정보

장기요양기관명	삼성훼밀리요양원	장기요양 기관 기호	1-41570-00238
기관유형	노인요양시설	지정 일자	2017-08-01
전화번호	031-984-1336	FAX 번호	031-984-1307
홈페이지	www.sfnh.co.kr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278번길 49-27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시설급여	소유현황	자가

■시설현황

침실(생활실)				특 별 침 실	사 무 실	의료및 간호사 실	자원 봉사자 실	물리 치료 실	프로 그램 실	식당 및 조리 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기계실 및 세탁실
1인 실	2인 실	3인 실	4인 실	1	1	4	1	1	4	1	58	7	1
12	10	-	26										

■종사자 근무체계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구분	총원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요양 보호사	(계약 의사)	사무원	위생원	관리원
인원	88	1	1	5	9	2	63	1	2	2	2
보유 자격		사회 복지사	사회 복지사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요양 보호사	의사	-	-	-

[주야간, 평·휴일 직원인력]

-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등)에 의거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야간에는 야간전담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 ② 장기요양 기관의 특성상 평·휴일에 구분 없이 근무 상황표에 따라 24시간 운영합니다.

■시설급여 비용(본인부담금 30일기준)

등급	일일 급여	공단지원 보험료(80%)	입소자 부담금 (단위 : 원)				
			본인부담금 (20%)	본인부담금(12%/8%)	식대	간식비	합계
1등급	93,070	2,233,680	558,420	335,052/223,368	360,000	60,000	978,420
2등급	86,340	2,072,160	518,040	310,824/207,216	360,000	60,000	755,052
3,4,5 등급	81,540	1,956,960	489,240	293,544/195,696	360,000	60,000	643,368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급여비용(본인부담금 30일기준)

구분	산출 근거	금액(월)
식재료비	4,000원×3회	월 360,000원
간식비	1,000원×2회	월 60,000원
상급병실 이용료(1인실)	20,000원×1일	월 600,000원
상급병실 이용료(2인실)	10,000원×1일	월 300,000원

■시설의 규모, 설비

구분	면적(m ²)	층별시설
옥상	672.69	창고, 야외 건조대
5층	672.69	요양실 (행복 1~15 실), 프로그램실 및 휴게실 , 간호사실 , 목욕실
3층	672.69	요양실 (사랑 1~15 실), 프로그램실 및 휴게실 , 간호사실 , 목욕실
2층	672.69	요양실 (소망 1~15 실), 프로그램실 및 휴게실 , 간호사실 , 목욕실
1층	630.58	요양실(믿음 1~3실), 특별침실, 사무실, 상담실, 원장실,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직원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지하 1층	772.34	조리실 ,식당, 물리치료실, 세탁실, 기계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다목적 1~3실